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종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81

발의연월일: 2020. 11. 30.

발 의 자:최종윤・양이원영・양경숙

소병훈・장철민・조승래

강선우・한병도・강득구

윤준병 • 인재근 • 맹성규

박성준 · 김민철 · 양정숙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서는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제 작된 특수구급차를 5대 이상 보유하고,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, 차고 및 교육훈련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.

그러나 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회사명의로 등록한 후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,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구급차의 경우 응급구조사를 동승시키지 않거나 응급환자 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구급차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,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

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의4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4조의4(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)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 차등을 운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55조제3항제1호 중 "제44조의2제2항"을 "제44조의2제2항, 제44조의 4"로 한다.

제60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4조의4(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) 제44조제1항제 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의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
제55조(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· 자격 정지 등) ①·② (생 략)	<u>할 수 없다.</u> 제55조(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· 자격 정지 등) ①·② (현행과
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의 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 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	같음) ③
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 (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. 이하 제4항에서 같다)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. 1. 제18조제2항, 제28조제3항,	

35조의2, 제44조제3항, <u>제44조</u>의2제2항, 제45조제1항, 제46조의2, 제47조제1항 · 제2항, 제48조, 제49조제3항 · 제4항,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52조제1항, 제53조, 제54조제3항,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

- 2. ~ 6. (생략)
- ④ ⑤ (생 략)

제60조(벌칙) ①・② (생 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
- 1. (생략)

1의2. ~ 1의4. (생략)

2. (생략)

<신 설>

- 3. (생략)
- ④ (생 략)

	<u>제44</u>
	조의2제2항, 제44조의4
	2. ~ 6. (현행과 같음)
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	60조(벌칙) ①・② (현행과 같
	<u> </u>
	③
	1. (현행과 같음)
	1의2. ~ 1의4. (현행과 같음)
	2. (현행과 같음)
	3.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
	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
	등을 운용하게 한 자
	<u>4.</u> (현행 제3호와 같음)

④ (현행 제4항과 같음)